

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5년 2월 14일

나. 회부일자 : 1995년 2월 14일

3. 제안이유

○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

- 개정 법령과 관련된 조례의 조문 정리와

-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표준세율을 확정코자 하는 것임.

※ 지방세법 개정(법률 제4,794호. '94.12.22)

지방세법시행령 개정(대통령령 제14,481호. '94.12.31)

4. 주요골자

○ 조문 정리 내용

-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 변경

- 취득세 과세대상에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추가
- 등록세의 신고납부 규정 신설
-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중 지하수 세율 조정

<p>(현 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 하 수 : 톤당 15원 	<p>(개 정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음 용 수 : 톤당 100원 - 은 천 수 : 톤당 50원 - 기타용수 : 톤당 10원
--	--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,
 이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
 현행 조례 조문상의 법 적용 규정 조항등의 조문정리와 자구를 삽입하여
 현실과 불부합한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내용이며,
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자가 그에 따른 세액을 산출
 하여 자진납부토록 하던것을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제20조의 아래
 항목 중 증기 분야를 건설기계로 함과 아울러
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국한하여 적용되던 취득신고 및
 자진신고 납부등에 있어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을 추가하여 시행할 수
 있도록 하였으며
 또한 등록세의 신고납부 규정의 신설과 지역개발세과세대상 중 지하수의
 세율에 있어 지하수를 개발하여 채수된 물 1세제곱미터당 15원으로 하던
 세율을 확대조정 인상하여

그 표준세율을 음용수에 있어서는 톤당 100원으로, 온천수는 50원, 기타
용수는 10원으로 각각 확정시행코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
본 개정조례안은 관련조례의 조문정리와 표준세율의 확정을 위해 개정코
자 하는 내용으로서 승인하여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6. 칙 부

충청북도세 조례 중 개정조례(안)